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June, 2025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중국 프랜차이즈 법률 및 판례 실무 동향

1.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및 조례
2. 컴플라이언스 요구 강화
3. 분쟁 해결 동향 및 시사점

■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두 부서, 《데이터 보안 기술 –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구사항》 전문 공개
02. 두 부서, 《스마트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 년판)》 발표
03. 국가 사이버 보안 표준화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준수 감사 요구사항 등 발표
04. 두 부서, 《노동 능력 감정 관리 방법》 공표
05. 증권감독위원회, 《상장사 중대한 자산 재편 관리 방법》 수정
06. 해관총서, 수입 화물 “2 단계 신고” 통관 방식 전면 확대
07. 중국, 240 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적용 국가 55 개국으로 확대

■ 법률 뉴스 ■

중국 프랜차이즈 법률 및 판례 실무 동향

중국의 프랜차이즈 법률, 판례 및 사법해석 등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및 조례

- 1)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商业特许经营管理条例》(2007.5.1 시행): 프랜차이저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가맹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함.
- 2) 「상업 프랜차이즈 등록 관리규정」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2012.2.1 시행, 2023.12.29 개정):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상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관리규정」 《商业特许经营信息披露管理办法》(2007.5.1 시행, 2012.4.1 개정): 프랜차이저의 사전 정보공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 4) 「외국인투자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2020.1.1 시행):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 프랜차이저도 중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 가능함.

2. 컴플라이언스 요구 강화

1) 프랜차이즈 등록절차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는 프랜차이저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후 15 일 이내에 중국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프랜차이저도 현지 법인 없이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 만~10 만 위안의 과태료, 위반 사실의 공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 8 조), 이는 프랜차이저의 신뢰도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의무

프랜차이저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30 일 전까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기업 정보, 재무상황, 가맹 수수료, 교육지원, 기존 가맹점 현황, 소송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제공할 경우, 프랜차이저는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요구사항

프랜차이저는 소위 ‘2+1 요건’이라 불리는 사전 영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제 7 조에 따라, 직영점 2 곳 이상을 1 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영점도 인정되므로, 외국 프랜차이저는 본국 또는 타국에서의 실적을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요건을 충

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전 고지 및 동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무효로 보지 않는 판례(예: 북경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12 년 사건 제 14491 호)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 시 프랜차이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요건 충족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및 정보공개는 중국 상무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외국 기업의 경우 공증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정보공개서 또한 중국어로 제공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중국은 2023 년 11 월 7 일부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여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3. 분쟁 해결 동향 및 시사점

중국은 1987 년 뉴욕협약 가입국으로, 국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 합의가 불명확할 경우 무효로 판단된 사례도 있으므로(예: 深圳市중급인민법원 2020 년 사건), 중재기관 및 규칙을 명확히 특정해야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프랜차이즈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강화와 함께, 프랜차이즈 보호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 프랜차이즈는 법정 요건 준수와 정보공개의 충실성 확보, 행정처분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두 부서, 《데이터 보안 기술 -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구사항》 전문 공개 
02. 두 부서, 《스마트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 년판)》 발표 
03. 국가 사이버 보안 표준화 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준수 감사 요구사항 등 발표 
04. 두 부서, 《노동 능력 감정 관리 방법》 공표 
05. 증권감독위원회, 《상장사 중대한 자산 재편 관리 방법》 수정 
06. 해관총서, 수입 화물 “2 단계 신고” 통관 방식 전면 확대 
07. 중국, 240 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 적용 국가 55 개국으로 확대 

법무법인[유] 지평